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송 및 최종진료 개념을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의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
-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제48조의2).
-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진료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 배치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32조).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지역이송체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63조).

II. 검토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관계기관 의견

- 대한의사협회는 ① 응급환자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 제48조의2제1항¹⁾ 및 ② 중증응급환자 수용기관 지정체계를 규정한 개정안 제48조의2제6항²⁾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①과 관련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에 대하여 사전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송된 환자를 수용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 전 수용능력 사전확인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②와 관련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 두 기관이 모두 우선수용병원 지정 주체가 될 경우,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1) 제48조의2제1항에 대한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6. (생 략)

- 2) 안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⑥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지역이송체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문제가 있으므로, “119구급상황센터”를 삭제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권한을 일원화하자는 입장임.

- ②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는 응급의료체계 혼란 및 파장을 고려하여 안 제48조의2제6항에서 “119구급상황센터”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였음.³⁾

(전문위원 윤 상 열)

3)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부대의견 부분

4. 부대의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의 내용 중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포함됨으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이외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어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소방청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무력화시키고, 이송에 대해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하고만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체계에 미칠 파장이 크므로, 동조 제6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삭제되어야 한다.